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

확인번호		확인 연월일	
신청인	상호(명칭)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	
	사업장 소재지 (우편번호)		
	대표자		
확인내용	명칭		
	주요 내용		
	유효기간		
	※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32조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.		
조건			

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직인

